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삼성SDS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 일 시 : 2017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오후 3시
- ▶ 장 소 : 호텔 아르누보 역삼 3층 회의실
- ▶ 일정

순서	제목	발표자
10:00-10:20	▶ 발제 1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향과 대응방안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5-10:45	▶ 발제 2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언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0:50-11:10	▶ 발제 3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김현아 법무법인 지엘
11:10-11:30	COFFEE BREAK	
11:30-11:50	▶ 발제 4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서민수 인천중부경찰서
11:55-12:15	▶ 발제 5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20-13:10	▶ 종합토론 좌장 정제영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현아 법무법인 지엘 서민수 인천중부경찰서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연 서울수서경찰서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3:10-15:00	LUNCH	

목 차

▶ 발제 1 ◀

-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향과 대응방안 1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 2 ◀

-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언 27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 발제 3 ◀

-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41
김현아 법무법인 지엘

▶ 발제 4 ◀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59
서민수 인천중부경찰서

▶ 발제 5 ◀

-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69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발 제 1

▶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향과 대응방안

이 승 현 _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1. 배경

-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있음.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청소년독이나 실시간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노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2년 1차 12.3%에서 2017년 1차 0.9%로 감소하고, 가해율도 2012년 1차 1.1%에서 2017년 1차 0.3%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사이버괴롭힘 등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2년 2차 7.3%에서 2016년 2차 10.9%로 증가하고 있음. 사이버폭력의 피해유형도 과거에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따돌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합성사진 보내기, 음란사이트 신상노출하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감금, 아이디도용, 사이버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를 사이버폭력 각각의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전문가그룹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상 및 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함.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

- 사이버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으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성인의 사이버폭력과 몇가지 차별성을 가짐. 현실과 사이버상 경계가 모호하고, 폭력의 고의성이 희박하며, 특정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청소년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사이버따돌림에 한정되어 있어 사이버감금,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 등 청소년 사이버폭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폭력’과 ‘불링’이 혼재되고 있음.
- 대표적인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으로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이고, 최근 신종 유형으로 카따, 떼카, 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하트셔틀, 게임셔틀 등 다양, 화되고 있음.

3.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가.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대책이 중심임. 법무부와 경찰청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및 선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는 온라인중독 폐해예방 중심으로, 미래부 등은 온라인산업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부처별 사이버폭력대책은 신고 및 상담서비스, 예방교육 등이 부처간 중복되거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사이버폭력예방대책이 중독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기적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음.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선도 및 처벌 사례

-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은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사이버폭력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드뭄.
- 청소년사이버폭력은 관련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음.

4.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가.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응방향

- 외국에서는 사이버폭력의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유형에 대하여 연방법률 뿐만 아니라 각 주법에서 명확하게 개념정의하고 있음. 각국마다 형태는 다르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모델을 마련해두고 있음.

나. 국가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특징

- 호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행위자 및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본의 경우 관련법제정을 통해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독일은 학교내 사안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

5.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청소년사이버폭력 관련 조사결과 분석

가.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상에서 욕하기, 나쁜 소문 내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율이 22.3%에 이름. 주로 아는 가해자, 즉 같은반 학생이나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28.0%는 현실에서도 피해를 당하였고, 20.9%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먼저 당하고 같은 가해자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순수 가해집단과 가·피해경험 중첩집단이 처벌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예방정책에 대하여는 가·피해자 분리, 강력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인터넷 이용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 결과분석

- 사이버불링과 달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험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평가함. 학교내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므로 선도와 처벌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위유형별로 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 선도의 영역에 둘 수 있다고 봄.

6.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가.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1) 사이버폭력 유형별 선도와 처벌 대상 구별

- 사이버비방,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의 극도화나 행위의 장기간 반

복 또는 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도’의 영역으로 보아야 함.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갈취, 사이버스토킹은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므로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처벌’ 영역으로 구별할 필요. 처벌 영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지 않은 경우 재고할 필요 있음.

청소년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처벌필요성 인정순위

순위 (낮은 순서부터)	청소년의 처벌필요성 인정순위	전문가의 처벌필요성 인정순위
1	사이버배제	사이버배제
2	직접 욕하기(사이버비방)	플레이밍
3	사이버 감옥(사이버감금)	사이버비방
4	플레이밍	이미지불링
5	와이파이셔틀	아이디도용
6	저격글(사이버비방)	사이버명령
7	나쁜 소문내기 (사이버비방)	사이버감금
8	이미지 유포	안티카페
9	사이버 갈취	사이버불링
10	사이버 집중공격	사이버갈취
11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스토킹
12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13	아이디 도용	
14	사이버 명령	
15	신상털기	

2) 중복 가·피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필요

- 사이버폭력은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거나, 중복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유형의 경우 장기간 반복피해인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중복 가·피해 경험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치료 필요.

나.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1) 사이버폭력 개념설정을 위한 법개정방안

-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 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청소년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폭력</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 <u>사이버폭력</u>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형법상에는 모욕행위와 명예훼손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입법상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어야 함.
- 사이버상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 신분을 나타내고 있고, 아이디도 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므로 아이디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도 온라인상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2) 사안처리 전문화 및 신고·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사이버폭력 사안처리 전담교사의 정기적 연수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 높이고 사안대응의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117 등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인지도는 낮으므로, 사이버폭력 신고 방식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 미국의 "A Thin Line" 캠페인과 같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유형별 대처방안에 맞춤형 상담이 되도록 상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

3) 화해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처리절차 마련

-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장기간 누적된 이후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심각해진 이후 화해단계에 돌입하게 되어 화해조정이나 갈등해결이 실패하게 됨.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한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화해조정시 피해자 신청여부에 따라 화해절차를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모델의 변화

- 학령기별로 발달단계별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함.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표준화된 예방교육모델안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이 사이버매체에 접근할 때부터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함.

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1) 사이버폭력 맞춤형 선도조치 개발

- 사이버폭력의 가해행동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즈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선도조치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일부 제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명령' 도입이 필요함.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사이버폭력 사안 발생이 자치결정에 따라 벌금을 부여하는 '학생자치벌금제'도 고려해볼만함.

2) 사이버폭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가해행동은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동일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오즈비가 높아지므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외국의 경우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음.

마.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1) 개별화된 피해자 상담 및 개입

- 사이버폭력 피해의 28.9%는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현실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중복 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이 필요함.
- 폭력 가·피해 중첩집단 비율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상 학교폭력은 19.4%, 사이버폭력은 38.4%로 매우 높게 나타남.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피해 중첩집단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상자 개별 지원이 필요함.

2)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 사이버공간에 한번 게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이버공간에서

떠돌게 되고, 영구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게 됨.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삭제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음.

- 잊혀질 권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잊혀질권리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대상범위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관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어 본인 또는 타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넷 언론보도 내용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정보삭제권에서 한차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기업이 적극적으로 삭제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3) 피해 또래학생 멘토링 지원

-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영국의 경우 'Cyber-mento', 미국의 경우 'Teenangels'이라는 또래집단에 의한 멘토링 지원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또래의 시각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또래멘토가 제공해주는 멘토링은 피해학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바. 관련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방안

- 사이버매체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입법화하고, 기업 스스로 유해정보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독일의 '자율규제시스템(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화방 초대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민간기업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사.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사안의 발견-조사-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사이버폭력 담당협의체를 구축하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함.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청소년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2017. 8.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

목차 CONTENTS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 논의배경
2. 청소년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4.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소개
5. 청소년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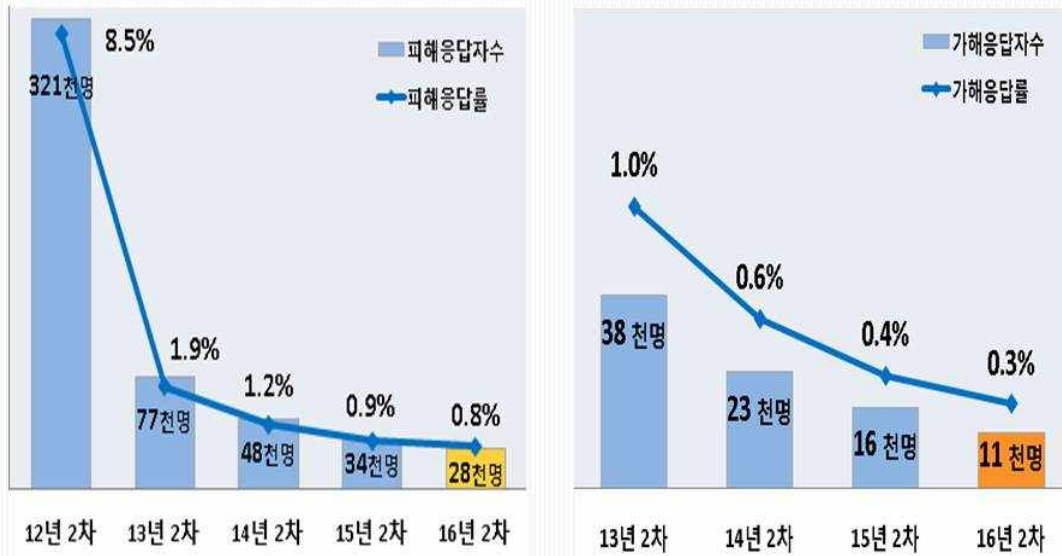
I. 청소년사이버폭력의 논의배경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률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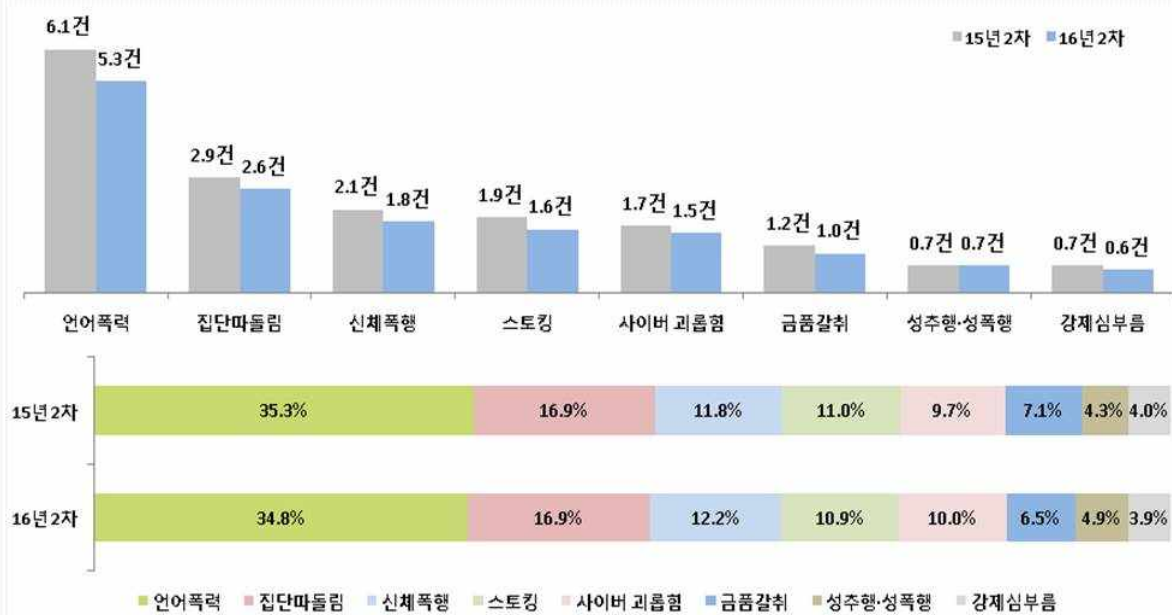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연구결과>

학교폭력 가/피해율 감소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연구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변화



<2015/1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Ⅱ. 청소년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사이버폭력의 개념

-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법률상 정의 규정은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 “사이버따돌림” 정의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감금,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 등 다양한 사이버폭력 유형을 포괄하지 못함

청소년사이버폭력의 특징

- 빠른 피해 확산속도
- 피해의 가중
-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 가해 진원지 추적의 어려움
- 고도의 기술 접목으로 인한 법률 집행의 어려움
- 2차 피해의 가능성

+

-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경계가 모호
- 폭력의 고의성 희박
- 특정행위 유형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청소년사이버폭력의 유형

- 사이버모욕
-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게임/아이템 셔틀
- 사이버따돌림: 카따, 떼카, 카톡방폭
- 이미지불링
- 아이디도용
- 사이버감옥: 카톡감옥
- 사이버명령
- 안티까페

Ⅲ. 청소년사이버폭력의 대응정책

부처별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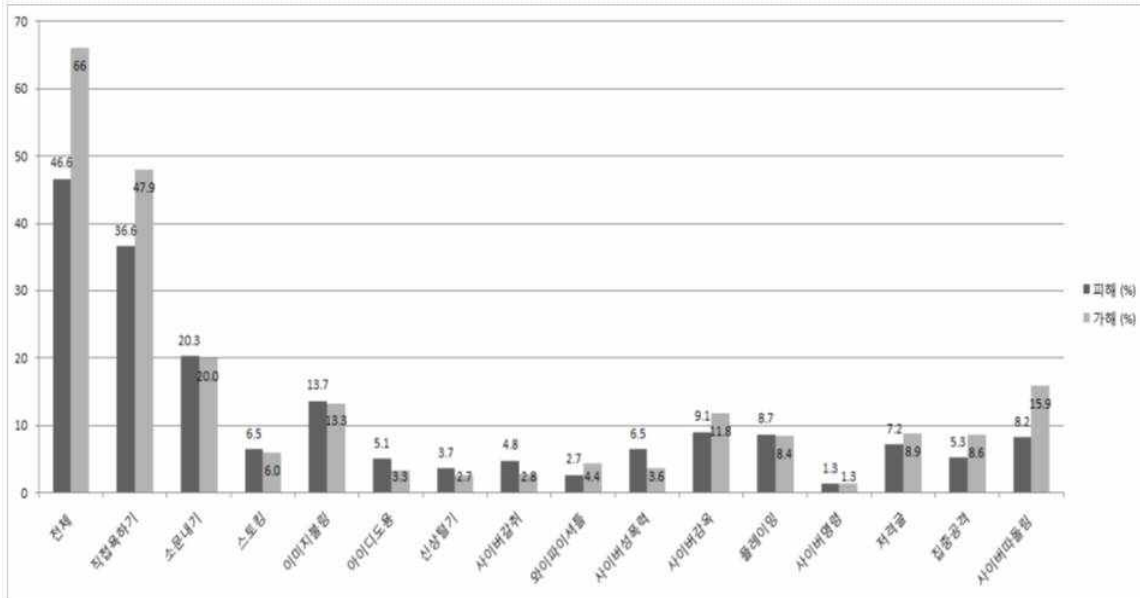
-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신고 및 예방교육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사이버폭력예방거점 Wee센터 운영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학부모교육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중독 실태조사, 인터넷 치유학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가족치유캠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의 인터넷사이트 적발 및 폐쇄조치, 117신고센터
-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예방 법교육, 학생자치법정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 사이버폭력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
⇒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 드뭄.
- 관련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음
- 학교 내 폭력행위 파악이 어려워 선도조치 사례 많지 않음.
※ 2012-2015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서면사과, 교내봉사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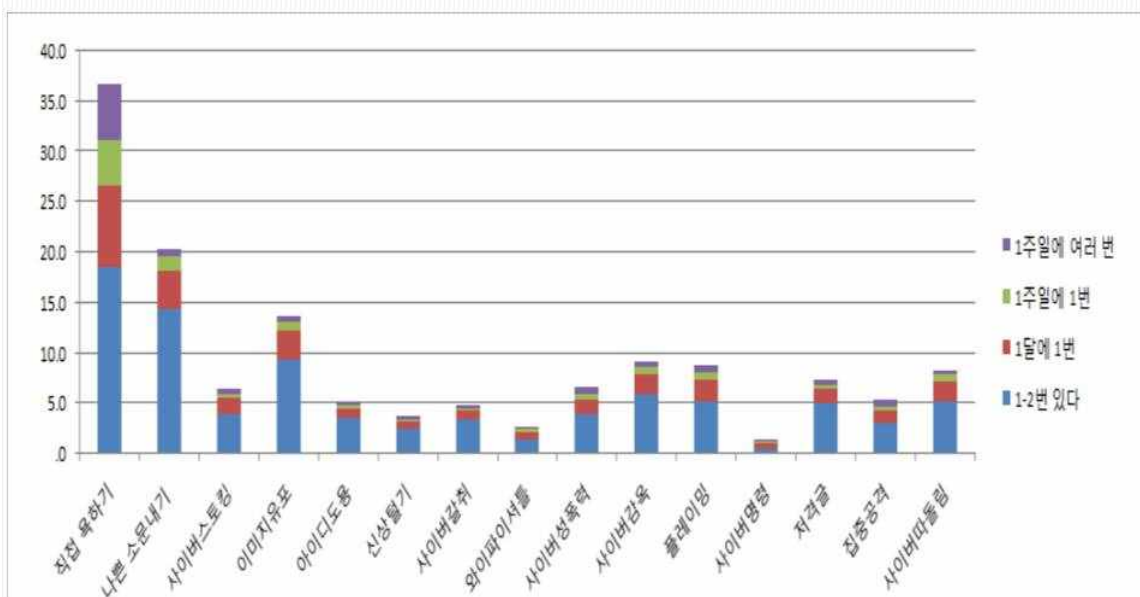
IV. 청소년 사이버폭력 인식조사 결과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피해경험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빈도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사이버폭력 다중피해 현황

피해를 경험한 유형의 건수	N	%
0개, 피해없음	2,842	53.4
1개	936	17.6
2개	526	9.9
3개	343	6.4
4개	220	4.1
5개	136	2.6
6개	94	1.8
7개	62	1.2
8개	47	.9
9개	22	.4
10개	16	.3
11개	13	.2
12개	8	.2
13개	11	.2
14개	7	.1
15개	39	.7
계	5,322	100.0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사이버폭력 피해자성별에 따른 추가해자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	다른 학교 학생, 학교 밖 또래	전혀 모르는 사람
남성	N	297	186	99	496
	%	27.6%	17.3%	9.2%	46.0%
여성	N	320	253	100	183
	%	37.4%	29.6%	11.7%	21.4%
전체	N	617	439	199	679
	%	31.9%	22.7%	10.3%	35.1%
카이제곱		131.624***			

*** $p < .001$, ** $p < .01$, * $p < .05$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로짓분석

- 사이버자신감이 높을수록
-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 친한 친구 중 사이버폭력으로 처벌받은 친구가 있는 경우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
-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면 길수록
-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 사이버폭력 피해의 오즈비 높음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오프라인 전이

-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28%는 오프라인에서도 피해
- 20.9%는 오프라인 폭력피해를 입고 이후 사이버폭력 피해
- 7.6%는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입고 이후 오프라인상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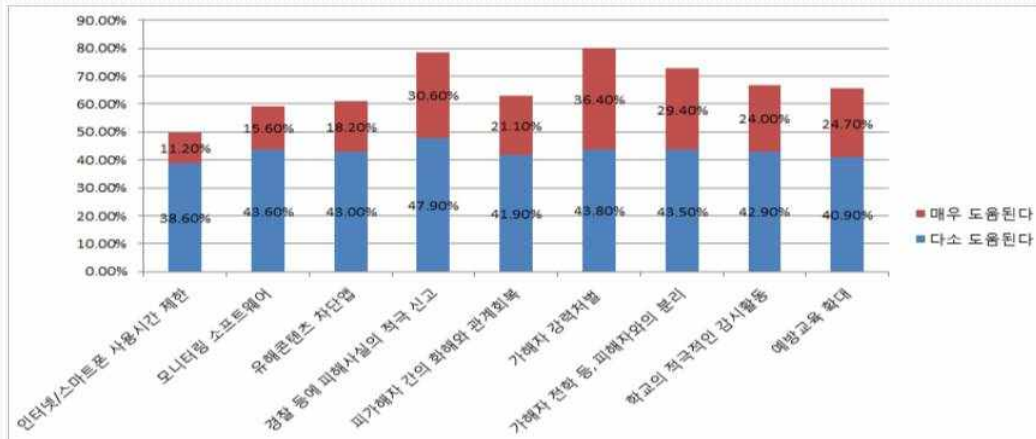
		현실에서 먼저 당함	사이버에서만 당함	사이버에서 먼저 당하고 현실에서도 당함
초등	N	70	181	15
	%	26.3%	68.0%	5.6%
중등	N	103	397	38
	%	19.1%	73.8%	7.1%
고등	N	75	281	38
	%	19.0%	71.3%	9.6%
전체	N	248	859	91
	%	20.7%	71.7%	7.6%
카이제곱		9.759*		

***p<.001. **p<.01. p<.05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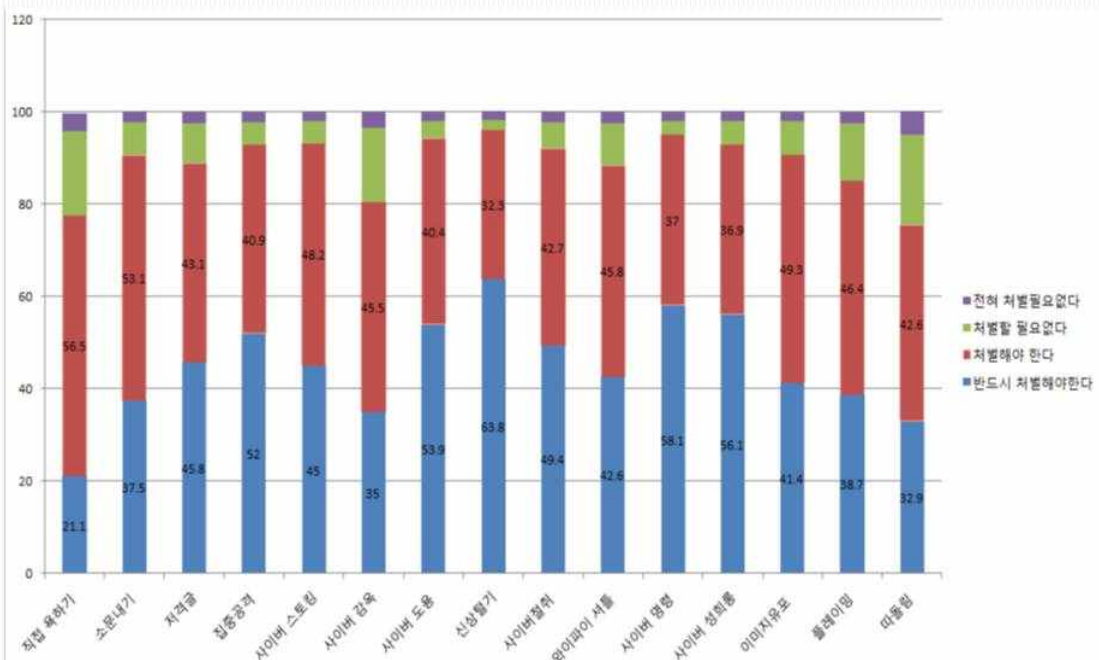
청소년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

- 순수가해집단과 가/피해경험 중첩집단이 처벌필요성을 낮게 인식
- 가해자 분리, 강력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 인터넷 이용교육 횟수가 많을 수록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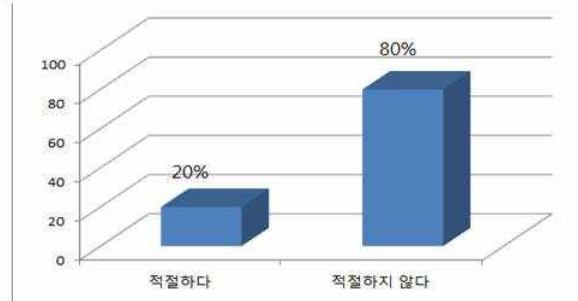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관련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 개념 필요



-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험형 예방교육 절실
- 학교내 사안처리에 있어 가/피해 구별,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
 - ⇒ 선도와 처벌 영역 구별 필요
 - ⇒ 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 '선도'의 영역

<이승현, 청소년사이버폭력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V.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순위(낮은 순서부터)	청소년의 처벌요청 인정순위	전담기관의 처벌요청 인정순위
1	사이버매제	사이버매제
2	직접 폭력(사이버폭력)	몰래카메라
3	사이버 괴롭힘(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
4	몰래카메라	아이디 도용
5	외모비하	아이디 도용
6	자녀권(사이버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7	나쁜 소문(사이버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8	아이디 도용	인타프
9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명예훼손
10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명예훼손
1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12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13	아이디 도용	
14	사이버 명예훼손	
15	신상털기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법개정방안

●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정의 마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처벌규정 마련

● 아이디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미국 일부주, 캐나다 온라인상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모델 변화

- 학령기별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화
- 부처별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예방교육모델 마련
-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강화
-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 강화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조치 현실화방안

- 가해학생의 인터넷 이용 제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명령' 실시
- 학생들 스스로 규칙 만들어 결정에 따라 벌금 부과하는 '학생자치벌금제' 도입
-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자기통제력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 피해또래학생 중심의 멘토링 지원
 - ※ 영국 'Cyber-mento', 미국 'Teenangels'
- 온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
(사이버폭력피해 28.9%는 동일 가해자에게 오프라인에서도 피해)
- 가피해 중첩집단에 대한 집중적, 개별적 지원
(오프라인 학교폭력 19.4%, 사이버폭력 38.4%)
-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 ⇒ 피해자 정보삭제 요청시 기업의 삭제의무 강화

청소년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 관련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 규정
 - 기업의 자율적 유해정보 필터링과 모니터링
 - ※ 독일의 자율규제시스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 사이버폭력사례 개입을 위한 협의체 신설
 -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마련
 - 사이버폭력 전문가 교육 확대, 상담전문인력 양성

감사합니다.

발 제 2

▶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언

최 희 영 _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사례 중심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 및 해결을 위한 제안

1.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실태

최근 현장에서 청소년들 대상 취미활동을 물었을 때 “스마트폰 하기”를 취미활동으로 답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속에서 청소년에게 익숙한 사이버 기기는 따돌림,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 속 폭력은 익명성, 전파성 등 다양한 특징을 바탕으로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유발한다.

이에 학교폭력 현장 속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속 사이버 폭력 현황

(재)푸른나무 청예단은 2001년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 및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7,5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체폭력’ 23.7%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괴롭힘’ 19.8%, ‘집단 따돌림’ 16.0%, ‘금품갈취’ 9.5%, ‘언어폭력’ 8.7%, ‘사이버 폭력’ 8.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인식은 2015년도 7.0% 대비 8.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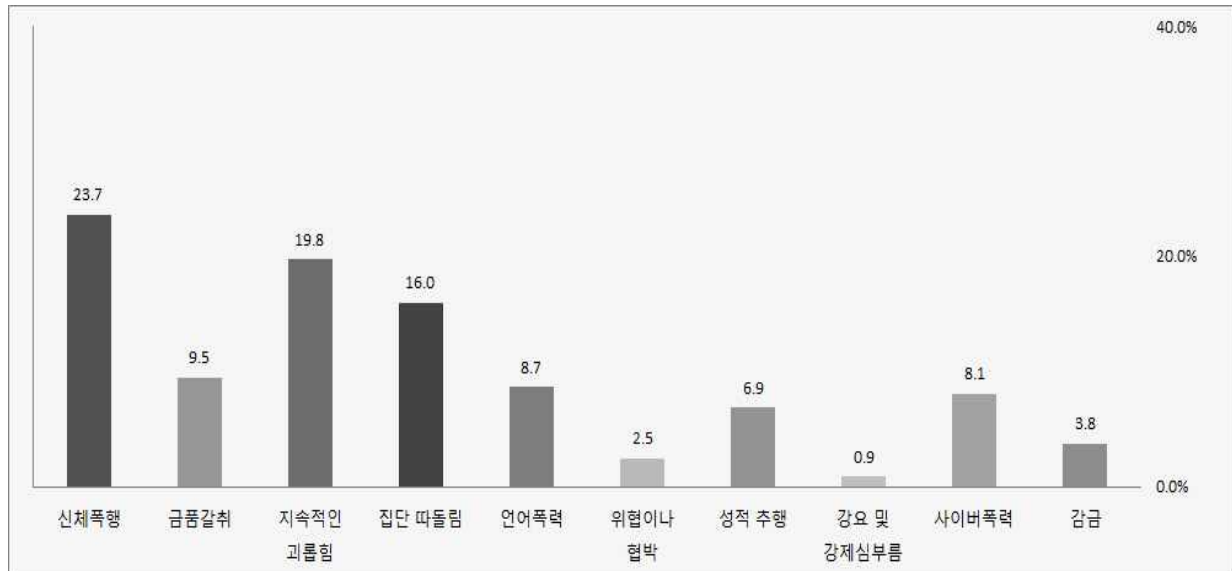


그림 1. 2016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표 1〉 2015-2016년도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비교

항목	2015년	2016년	증감
신체폭력	27.0%	23.7% ①	3.3↓
금품갈취	5.2%	9.5%	4.3↑
지속적인 괴롭힘	7.6%	19.8% ②	12.2↑
집단 따돌림	20.3%	16.0% ③	4.3↓
언어폭력	10.9%	8.7%	2.2↓
위협이나 협박	1.0%	2.5%	1.5↑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간 성적인 추행	19.8%	6.9%	12.9↓
강요 및 강제심부름	1.1%	0.9%	0.2↑
사이버 폭력	7.0%	8.1%	1.1↑
감금	—	3.8%	—
합계	100%	100%	—

2)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중 ‘피해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27.3%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고, ‘맞았다’ 20.7%,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은 5.1%로 2015년도 10.8%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의 비교 결과는 도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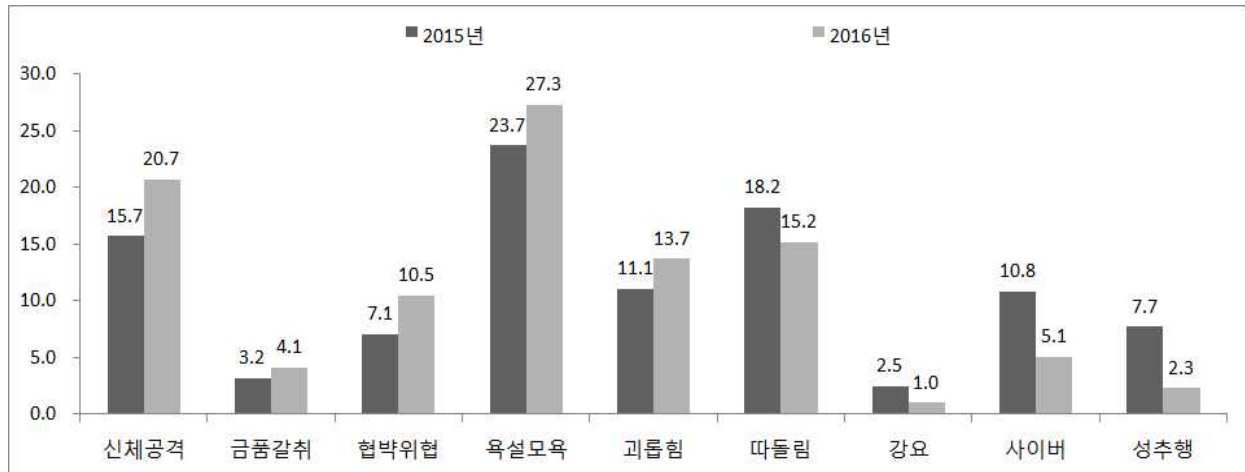


그림 2. 2015-2016년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 비교

3) 학교폭력 피해 장소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와 관련하여 '학교 안'이 66.5%로 전체 응답의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밖' 28.5%, '사이버 공간' 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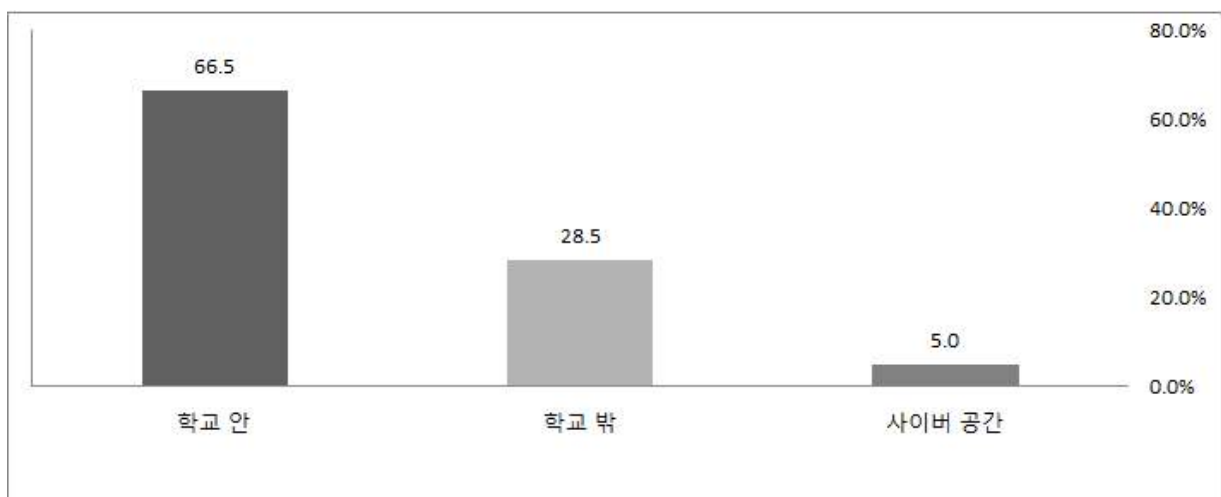


그림 3. 학교폭력 피해 장소

4)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

사이버 폭력의 피해유형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의 글이나 비방하는 소문이 퍼졌다' 12.0%, '위협이나 협박을 당했다'와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았다'가 각각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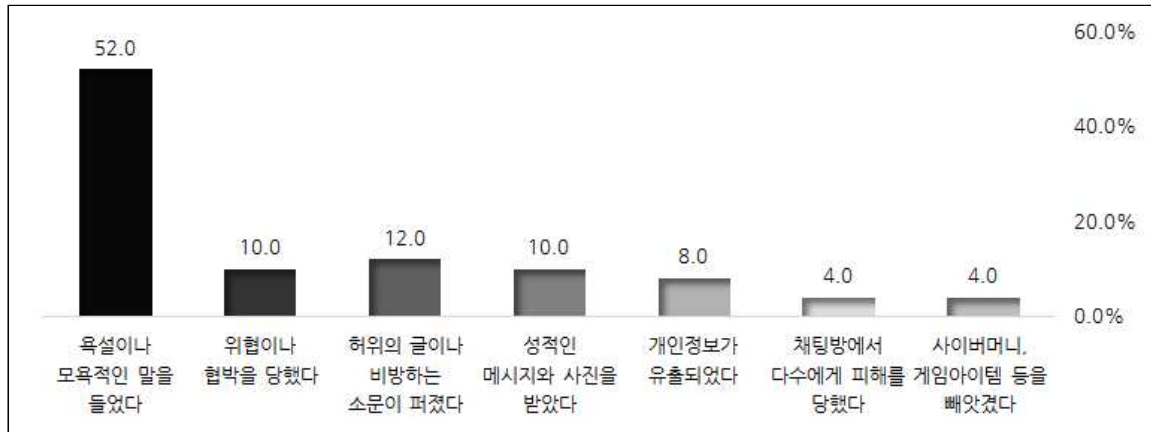


그림 4.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

5) 사이버 폭력 피해 공간

사이버 폭력 피해 공간과 관련해서는 'SNS'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메신저' 31.9%, '온라인 게임 웹페이지'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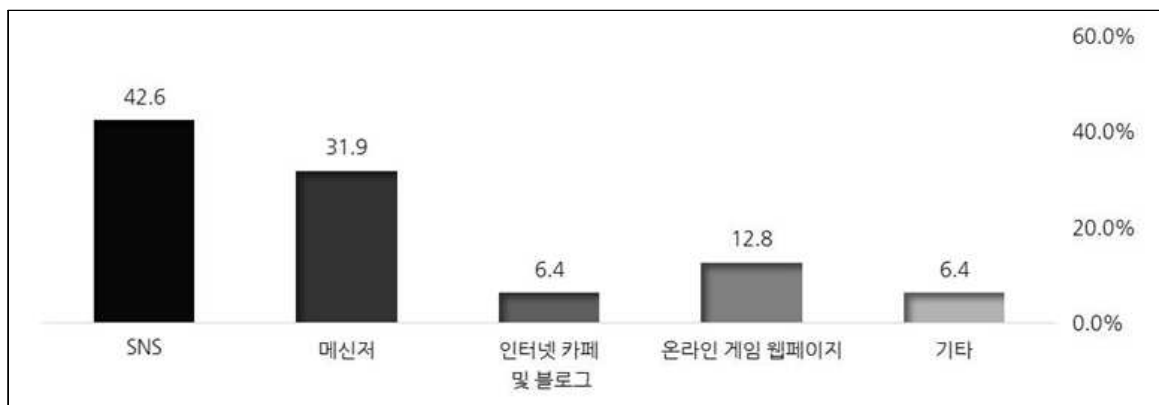


그림 4.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

나. 사이버 폭력 상담 요청 현황

(재)푸른나무 청예단은 학교폭력 관련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현장출동 위기상담, 분쟁조정, 상담·치료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푸른나무 청예단에 의뢰된 6,274명의 상담사례 중 (재)푸른나무 청예단 전산시스템에 분석된 학교폭력 상담요청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2016년 학교폭력 상담요청 사례 폭력 유형

2016년 (재)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요청 사례 중 폭력 유형 분석 결과 신체폭력으로 인한 상담요청 사례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23.3%, 따돌림 13.0%, 괴롭힘 8.6%, 사이버폭력 6.0%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상담요청 사례 폭력 유형 (복수응답)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괴롭힘	모욕 협박	기타	합계
29.2%	23.3%	3.6%	2.3%	13.0%	4.4%	6.0%	8.6%	3.0%	6.6%	100%

2) 2016년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사안 발생 장소

2016년 (재)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요청 사례 중 사안 발생 장소 분석 결과 학교 내 71.5%, 학교 밖 16.5%, 사이버 공간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별 사안 발생 장소 (복수응답)

학교 내	학교 밖	사이버 공간	기타	합계
71.5%	16.5%	7.7%	4.3%	100%

3) 2016년 학교 급별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특징

2016년 (재)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요청 사례를 분석 및 발췌한 결과 학교 급별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표 4〉 학교 급별 학교폭력 상담 요청 사례 특징

초등학교	- 가장 많은 사례 발생 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사례가 증가함. - 놀이, 장난과 폭력에 대한 애매한 인식과 생각차이로 인해 폭력이 발생 함. -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등 보이지 않는 폭력 증가로 인한 학교현장의 사안처리 어려움 호소 사례가 증가함. - 폭력에 대한 파가해측 간 인식 차이로 보호자간 갈등이 심화되어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함. - 성, 장애, 특수아동 관련 사례가 증가함.
중학교	- 진화된 학교폭력 유형이 증가함.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다른 유형 폭력(신체폭력, 괴롭힘 등)과 사이버 폭력이 병합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 - 남학생 : 신체폭력 사례 높음. - 여학생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폭력 유형 높음. - 성(性), 집단폭력 관련 사례가 증가함.
고등학교	-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큰 사례가 발생함. -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은폐 및 축소 경향이 있음. -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문의 및 행정심판, 각종 소송 관련 사례 증가함.

2.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학교폭력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피해 청소년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격적 언사나 욕설을 하는 사이버폭력 행위는 가해 청소년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살의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가. 사이버 폭력의 이해

1)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정의) 1의3.]

2) 사이버 폭력의 유형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출처: 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나.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1) 사이버 폭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과 재미로 시작한다.

- 사이버 공간 속 폭력을 가하게 되는 동기는 단순하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익명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동조되어 장난과 재미로 인터넷 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으로 폭력이 시작되기도 한다.
- 또한 재미로 흥미를 유도하는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 타인을 조롱하는 글,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실제 현장에서 가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남들 다 하는 장난에 동조한 것 뿐이다.’ ‘요즘 다 그렇게 놀고 장난치는데 피해측이 과민하다.’는 등 또래 문화라는 합리화 속에 무책임하고 공경적인 행동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 A(중2, 여)가 자신의 댄스 공연 영상을 SNS에 올림.
-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급 B(중2, 여)는 A의 공연 영상을 본 후 장난으로 SNS에 ‘이쁜척만 하고 실력이 없다’는 댓글을 달음.
- B가 댓글을 달자 같은 학교 및 학원 친구들이 동조하며 B의 의도와는 다르게 A에 대해 비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 일부 학생들이 A의 댄스 공연 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퍼날랐고 이후 A는 인터넷 유머사이트 게시판에 A를 비하하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오고 일부 남성들이 성적 발언을 댓글로 단 것을 목격함.
- 이에 모욕감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던 A는 방과 후 B를 불러 욕설을 함.
- B는 사이버 폭력의 의도가 없었고 장난으로 시작한 일인데, A가 모든 잘못을 B에게 있는 것으로 몰아가며 범죄자 취급한다고 A를 제외한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A 및 보호자의 험담을 함.
- 그룹 채팅방에 있던 C가 이 내용을 캡처하여 A에게 전송하였고 보호자간 법적 문제로 확대됨.

2) 사이버 폭력은 가해행동을 축소하여 생각할 수 있다.

- 사이버 폭력은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정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행동에 대한 죄책감들 덜 느낄 수 있다.
- 이러한 환경은 자신의 가해행동에 대해 축소 및 합리화 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시 가해행동은 반복, 확대 될 수 있다.

- A(초6, 여)는 수업시간 마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발표를 하여 다른 친구들의 미움을 사게 됨.
- A는 학급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SNS 단체 그룹방에 초대되어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잘난 척하고 다니지 말아라.’ ‘나대는 모습이 보기 싫다.’ 라는 이야기를 들음.
- 단체 공격에 놀란 A는 단체방을 나갔지만, 학급 학생들은 A를 반복해서 초대했고 욕설을 함.
- 우울한 마음에 A가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마다 학급 학생들은 ‘관심종자’라며 욕을 하고 A의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며 프로필 사진으로 권하기도 함.
- A는 학급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등교 거부를 했고 보호자는 이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학급 학생들은 A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답장을 하지 않아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더욱 기분이 나빴다고 하며, A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았을 텐데, 왜 A가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3) 사이버 공간의 빠른 파급력, 직·간접적 가해자의 동참으로 폭력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 사이버공간 속에서는 댓글, 복사, 공유, 퍼나르기 등을 통해 폭력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직·간접적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파급력은 피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폭력 수준보다 더 심각한 피해상황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 또한 피해 청소년은 자신을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 가해자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억울함, 불안함, 공포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심각한 심리적 손상으로 극단적 행동을 보일 우려도 있다.

-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여학생 B를 만남.
- B는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A의 사진을 찍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한 장 당 3,000원을 줌.
- 며칠 뒤 B가 용돈을 벌 생각이 있다면 다시 사진을 찍을 것을 제안함.
-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얼굴 없이 전신을 찍거나, 맨다리를 찍다가 점차 속옷 차림으로 찍거나 알몸으로 찍기를 요구함.
- A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진을 찍기가 싫었지만 상급생인 B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응했고 B는 A가 사진 찍기를 거부하면 그동안 찍은 사진을 학교 채팅방에 유포하겠다고 함.
- 그러던 중 A의 모는 지인으로부터 A의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올라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됨.
-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성인들이 A의 사진 댓글에 A의 신상정보 및 외모에 대한 비하, 성적 발언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함.
- A는 자신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 같다는 불안함, 공포심으로 고통을 호소함.

4) 사이버 폭력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일상화로 피해청소년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 사이버 폭력은 피해 청소년이 피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 청소년 폭력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물리적, 정신적 폭력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외출을 하지 않는 등의 가해청소년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을 통해 폭력상황을 피할 수 있다.
-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SNS, 카페, 게시판, 채팅 등을 통해 언제든지 폭력 피해 상황으로 소환될 수 있으며 피해청소년이 피할 수 없이 24시간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 최근 청소년 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등 하나의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피해 청소년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밖에서도 폭력에 노출되어 숨을 쉴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A(중1, 남)은 학교 일진으로부터 금품갈취, 괴롭힘, 신체폭행 등 피해를 당함. 학교 일진을 신고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A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가지 않음.
- A가 금품을 상납해야 하는데 등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일진들은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A를 소환하였고 맞은 후 피 흘리는 학생의 사진, 욕설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냄.
- A가 의도적으로 그룹 채팅방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자, SNS에 '00시 까지 휴대폰 켜고 답장하지 않으면 밤새 집앞에서 기다린다'는 협박 글을 올림.
- 이러한 글을 본 A의 친구 B가 A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사이버상에서 지속되는 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함.

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재)푸른나무 청예단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래의 응답들이 나왔다.

- “SNS나 메신저에서 댓글 등을 통해 언어폭력, 비난, 모욕 등이 난무하고 있어요.”
- “온라인 게임에서도 평소 학교 생활의 관계를 바탕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어요.”
- “그룹 메신저에서 의도적 따돌림을 유도하고 ‘몰아가기’ 같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허위 글이 유포되고 있어요.”
-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공간은 범죄 수준의 폭력을 부추기는 공간 같아요.”
-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비난은 유포가 될 수 있고 빠른 전파로 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것 같아요.”

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제안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는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을 장난과 재미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특성 상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 폭력은 다양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피해 청소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사이버 폭력 맞춤형 상담 및 대응기관의 설치와 연계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지속성 등 피해 청소년의 고통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대상자별, 사이버 폭력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재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피해에 노출되었을 시 학교, 경찰, 상담기관 등을 통해 일반 학교폭력과 동일한 절차를 바탕으로 상담 및 사안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심층 심리적 개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정보, 관련 대응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진행되듯이 사이버 폭력 또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를 통해 피해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사이버 활용을 위한 대상자별, 사이버 폭력 유형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 생활 속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간 속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의식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올리지 않거나, 타인을 함부로 욕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동조 및 배포하지 않는 등 기본 사이버 윤리 교육이 강화 및 활성화되어야 한다. 낮은 윤리의식은 사이버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러한 윤리교육은 청소년들에게만 진행했을 때에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발생한다. 청소년, 교사, 보호자 등 각 대상자별 맞춤형 윤리 교육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 노출 시 유형별 대응방법, 학교 및 경찰, 가정 내에서 접근 가능한 개입방안,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방법, 상담, 피해관련 정보 삭제요청 등 사이버 폭력 대응 관련 구체적 정보를 알려 주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위기 대응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다. 사이버 폭력의 저(低)연령화 추세에 따라 아동 시기에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 (재)푸른나무 청예단의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의 77.7%가 초등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아동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다하여 ‘Born Digital’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아동들은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현실 동일하게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태어나서부터 가족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동과 보호자가 사이버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근본적 사이버 폭력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

라. 사이버 공간을 음지에서 양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 사이버 공간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었다. 청소년의 일상 모습은 물론 소통 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편리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달라진 삶의 방식과 새로운 문화는 청소년 또래 간 소통의 단절 및 새로운 유형의 폭력, 범죄 등 부정적인 단면도 갖고 있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각 세대별 다양한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어른들은 늘 스마트폰 및 컴퓨터와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들 또한 어른들의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음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다.

- 어른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사이버 기기 활용 시간 및 공간의 범위를 정하거나, 사이버 기기를 활용하지 않을 시 운동 및 외부에서 직접 대면을 통한 소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 모델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을 넘지 않고, 기술의 좋은 점을 극대화 하여 윤리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변화와 더불어 정부 주도 하에 학교, 가정, 기업, 민간 등 모두가 협력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 제 3

▶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김 현 아 _ 법무법인 지엘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I. 들어가며

현대 사회 청소년들의 많은 생활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근래 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양상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다.¹⁾ 최근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12) 642건→('13) 878건→('14) 1,429건→('15) 1,842건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 발생 유형별 피해학생 현황을 살펴볼 때 성희롱(55.3%), 성추행(28.3%), 사이버성폭력(14.1%) 순으로 발생되고 있다.²⁾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³⁾가 입법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⁴⁾가 추가로 입법화되었고, 이전에는 처벌법규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거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었던 행위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음란물유포죄⁵⁾로 처벌되거나, 정통망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김현아_ 법무법인 GL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JSD) 젠더법 박사.

1) 사이버 성폭력이 법률적으로 명명된 바는 아직 없고,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교육부 보도자료 2017. 2. 24(금), <http://www.moe.go.kr/>

3)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⁶⁾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⁷⁾ 그리고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 분류에 따르면 중분류 강력범죄(흉악), 소분류 성폭력, 세분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를 분류하고 있다.⁸⁾ 경찰청은 ‘성폭속 범죄의 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의죄를 분류하고 있다.⁹⁾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발생율과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최근 신종 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속칭 ‘지인능욕’ 범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사이버 성폭력 범죄발생 현황

1. 청소년의 사이버 환경 현황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는 편리함과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즉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며 휴대폰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실제 우리나라의 2016년 가구내 데스크톱과 노트북, 태블릿 PC를 포함한 컴퓨터 보유율은 71.6%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개인보유 휴대폰 중 스마트폰(3G, LTE, LTE-A) 비중이 86.8%로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대검찰청, 「범죄통계」 분류 방식이다

9)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분류 방식이다.

10) 김미숙(2011),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117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¹¹⁾ 청소년들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의 휴대폰 보급률은 45.9%(스마트폰 31.7%)를 기록했다. 고학년(4~6학년)의 휴대폰 보급률은 77.0%(스마트폰 68.2%)까지 올라갔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휴대폰 보급률은 95.3%(스마트폰 93%)를 기록했다. 고등학생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94.7%와 89.5%를 기록했다.¹²⁾

2. 우리나라 주요 성폭력 범죄 실태

이러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비례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 비율은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2006년 1.4%에서 2015년 3.7%로, 10여년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¹³⁾

(단위 : 건,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카메라등 이용촬영	517 (3.6)	564 (3.9)	585 (3.6)	834 (4.8)	1,153 (5.6)	1,565 (7.1)	2,462 (10.5)	4,903 (16.9)	6,735 (24.1)	7,730 (24.9)
통신매체 이용음란	195 (1.4)	240 (1.7)	378 (2.3)	761 (4.4)	1,031 (5.0)	911 (4.1)	917 (4.0)	1,416 (4.9)	1,254 (4.1)	1,139 (3.7)
강간	2,510 (17.6)	2,659(18.5)	3,621 (22.5)	3,923 (22.6)	4,383 (21.3)	4,425 (20.2)	4,349 (18.6)	5,359 (18.4)	5,092 (17.1)	5,274 (17.0)
강제추행	4,984 (34.9)	5,348 (37.3)	6,080 (37.7)	6,178 (35.6)	7,314 (35.5)	8,535 (38.5)	10,949 (46.9)	13,236 (45.5)	12,849 (42.2)	13,266 (42.7)

그런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2015년도 검거는 7,430건으로 검거율이 97.6%이나, 기소율은 31.2%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로 3년간 기소율이 2010년(72.6%)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¹⁴⁾

11) 주재욱·정용찬·김윤하·오윤석(2016), 『2016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7면, 103면 참조.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1. 15, KISDI STAT Report Vol. 16-21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http://m.kisdi.re.kr/mobile/repo/stat_view.m?key1=13996&selectPage=1

13)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4-15면 참조.

14) 조소연(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VOL 11. 28면.

이처럼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되거나 불기소처분 되고 있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라는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 피고인들의 합의시도는 대부분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수단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거나 불기소되기 때문이니까요”
- “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학생인 경우, 어린 경우 조건부기소유예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관계이고, 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 “ 몰카도 성폭력 범죄라서 신상정보공개가 등록되기 때문에 검사입장에서 이 사진 촬영한 번으로 남자 인생을 망치나 싶어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1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 분석 결과¹⁶⁾ 피해자 성별 분석 결과를 보면 98.39%가 여성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¹⁷⁾ 남녀 피해자가 동시에 있었던 사안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투숙하는 투숙객들의 성관계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남성이 여성과 함께 피해자가 된 사안이었다.¹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인 43.68%, 직장동료 19.54%, 인터넷 6.32%, 친구 3.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26.44%에는 학원장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고생을 촬영한 사안,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촬영한 사안, 사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고객을 몰래 촬영한 사안, 호스트바 종업원이 손님을 촬영한 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촬영한 사안, 지인의 처를 촬영한 사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결과 중 1심 양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만 원 26.60%, 300만 원 22.00%, 100만 원 15.06%, 150만 원 12.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신속성,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단순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포된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김현아(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1면 참조.

16) 아래의 판결의 통계부분은 발제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던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2011. 1. 1.부터 2016. 4. 30.까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1심 1,540건, 항소심 278건, 상고심 48건 총 1,866건이 분석대상이었다.

17) 분석대상 판결 중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19건이었는데, 이 중 남성만이 피해자인 경우는 11건으로 대부분 남자화장실이나 남자탈의실에서 발생하였다. 남녀 모두 피해자인 경우는 8건으로 주로 모텔 등에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었다.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267. 이 사건은 총 범행횟수 293회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횟수는 77회(남녀 154명), 사진 촬영횟수는 216회였고,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7세)의 동의 하에 가슴 및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하나씩, 증거가 부족하면, 존내 많으니까, 걸레인걸 알려”라고 하며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갓 성년이 된 나이 어린 학생인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659)

피고인은 피해자(여, 35세)와 커플맞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920)

피고인은 피해자 (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가 드러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그 후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동영상 마지막에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게시하여 누구나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여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714)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유에스비와 쪽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피해자의 배우자가 볼 수 있도록 반포하고, 인쇄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거주지와 아이들 학교에 반포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695)

이러한 미약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정부는 ‘몰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¹⁹⁾

다음으로 합성사진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75회에 걸쳐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40대에게 법원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다.²⁰⁾ 이밖에도 문모(38·무직) 씨가 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19) 연합뉴스(2017.9.26), “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처벌도 강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27851001.HTML>,

20) 오마이뉴스(2009.1.8), “연예인-포르노 사진합성 유포... 형량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5759,

년을, 나머지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이처럼 수많은 여성 연예인에 대한 나체 합성 사진의 처벌 사례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에 대해 디지털 성폭력 고발단체인 디지털성범죄아워(DSO) 활동가는 자신들이 고발한 합성음란물 가해자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미약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²⁾

3.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실태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실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2년 181명에서 2013년 225명, 2014년 313명, 2015년 411명, 그리고 2016년 601명으로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의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13.4%로 늘었다.²³⁾

2013년~2017년 8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해자 연령별 현황 (검거인원)

구분	소년범 (19세 미만)	19세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 45세	46~ 50세	51~ 55세	56~ 60세	61~ 65세	65~ 70세	71세 이상	미상
2013년	225	58	39	416	648	513	333	268	133	84	53	11	14	9	28
2014년	313	72	53	421	521	509	324	257	173	126	65	25	15	8	23
2015년	411	91	70	628	761	675	473	321	216	133	88	25	24	11	34
2016년	601	112	79	678	777	730	495	352	223	211	113	40	29	15	44
2017년 8월	450	89	75	559	534	495	326	252	175	107	76	38	20	25	31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의 몰카 성범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청소년의 성범죄가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성범죄 검거 인원은 2013년 2708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²⁴⁾해 검거된 인원 역시 2013년 21명에서 2015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²⁵⁾

21) mbn뉴스(2014.6.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822576

22) 한국일보(2017.7.13), “SNS 판치는 ‘지인 능욕 계정’...여성들 뿔났다”
<http://www.hankookilbo.com/v/a6ff61186bc0456e881dce9872c88c36>

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3000059#a>

24)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다.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3>, 2016.09.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또는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높았다. 동의 없는 촬영은 물론, 상호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했다라도 연애 관계 종료 이후 헤어진 상대의 허락 없이 오로지 상대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등이 이러한 상담에 속한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 직장 동료 등에 의한 피해는 13.1%로 두번째로 높았고, 학교 선후배 등으로부터의 피해도 4%로 높은 편이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는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학교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인 경우는 21.4%, 가해자가 전/현 데이트 상대는 14.3%순으로 나타났다.²⁶⁾

(2) 촬영물 유포 실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행위와 유포행위가 처벌되며 유포는 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촬영대상자에 대한 타범죄의 협박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 여자친구가 결국 모텔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10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다.²⁷⁾ 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친구 7명에게 전달해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²⁸⁾ 최근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의 치마 속 사진을 찍은 후 다른 남학생 5명이 가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몰래카메라(몰카) 사진을 유포한 사건도 있었고, 경기 파주시 일대 중학교 세 곳에서도 남학생 9명이 5개월 동안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논란이 됐는데, 피해 여학생은 20명이 넘었으며 가해 학생들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다. 경찰은 “남학생들이 몰래 찍은 여학생 신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고 얼굴이나 몸매를 언급했다”고 말했다.²⁹⁾

26) 조소연(2017), 위의 글, 35면.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16년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이용 음란 관련 상담통계

27)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B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B양과 사귀던 A씨는 B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를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까지 했다. 견디지 못한 B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2000305020>

28) 한국경제(2017.8.18.), “단독방 성희롱·10대 몰카 범죄 급증… 새로운 성범죄 예방 교육 절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891691>

29)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2016년 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고, 이를 전달받은 다른 남학생 5명은 SNS 메신저로 다른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였다. 학교는 이 사실을 2017년 5월에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몰카를 찍은 두 명은 전학, 나머지는 각각 출석정지,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스마트폰 속 사진은 이미 삭제됐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824/85977333/1>

또한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39)씨에게 징역 1년, C(38)씨에 징역 8개월,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³⁰⁾

(3) 유포 후 삭제의 어려움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을 받아 삭제한 개인 음란물 건수는 2014년 140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5배가 증가하였다.³¹⁾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 사이트를 폐쇄하여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가해 행위를 계속한다.³²⁾

이런 현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영상물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터넷상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인터넷 분석능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디지털장외사의 업무 영역은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고 원치 않는 불법 동영상을 지워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원치 않는 게시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대행하고 삭제까지 소요기간은 짧게는 단 몇 분에서부터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³³⁾ 실제 인터넷상에서 개인 영상물 삭제를 대행해주는 한 업체에 따르면, 잠재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신고 접수된 사례는 1% 미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³⁴⁾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면 유포된 해외, 국내의 촬영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매 월 최대 300만원이 소요되며, 영상은 끊임없이 재유포되기에 끊임없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³⁵⁾

30) A씨와 B씨는 딸이 다니는 울산의 한 여자중학교의 교장실을 찾아가 자신의 딸을 왕따시킨 학생들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나머지 조폭들은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볼 수 있게 문신을 드러내며 협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장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은 직접 수업 중인 3학년 교실로 찾아갔다. 이들은 교실에 들어가 큰소리를 치고,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또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한 뒤 “가만두지 않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폭력으로 침해했다”며 “충격과 공포로 여러 학생들이 쉽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학교의 자율과 순수성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교사에게 능욕을 취 다수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04001904>

31) jtbc뉴스(2017. 6. 15), “소라넷은 폐쇄됐지만...‘리벤지 음란물’ 피해는 여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2368

32) 박수연(2016), “디지털성범죄 실태보고서”,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 자료집』, 2016년 11월 29일, 23-24면 참조, 한 예로 소라넷 폐쇄가 진행되는 당시 별도의 백업 사이트까지 존재할 정도로 결국 영상들은 다시 널리 퍼져 나갔다. 이처럼 오래전 동영상들은 ‘고전영상’이라고 하여 10년, 20년 지속해 게시되고 있어 끊임없는 재유포 피해의 예시중 하나이며, 지금도 유명여가수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서울경제(2017.6.5.), “잊힐 권리 대행해 주는 디지털장외사 각광, 개인명성관리 일환 정치·경제인, 연예인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http://www.sedaily.com/NewsView/1OH22Z6IS25>(검색일 2017. 6. 10), 디지털장외사는 의뢰자의 삭제대상 정보 URL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개인정보, 명예훼손 요인을 판단해 삭제처리를 진행한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게시물이나 웹하드, P2P 게시물 등 삭제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34) 김호진(2016), “성행위 영상삭제 현황 사례”,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포럼 자료집』, 2016년 11월 29일, 32면 참조.

결국 이러한 비용문제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미처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이 인터넷·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9명에서 2015년에는 20% 가량 증가한 189명으로 증가했다.³⁶⁾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파악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71.8%에 해당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관련 있는 상대방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19.6%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비하, 성적요구를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이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대로 온라인 매체로 연장된 것이다. 현/전 데이트 상대방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9.8%로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와 채팅상대방부터의 피해가 각각 13.7%로 높은 편이다. 청소년의 경우는 가해자 미상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제외하면 학교와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각각 30.8%, 15.4%로 높게 나타났다.³⁷⁾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0대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영상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고,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영상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는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³⁸⁾

3) 지인 능욕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사이버 성범죄 중 ‘지인능욕’이란, 일반인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제작하고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는 성폭력 범죄이다. 과거에는 주로 그 대상이 여성 연예인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연예인이 아닌 지인의 얼굴 사진을 보내 알몸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상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여학생의 얼굴과 이름, 학교 등 개인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지인능욕’이 문제되고 있고, 10대 전용 지인능욕 전문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사진들이 올라오는 곳이 ‘은꼴게시판(은근 꼴리는 게시판)’이

35) 박수연(2016), 위의 글, 27-28면 참조

3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다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3>(2016.09.21)

37) 조소연(2017), 위의 글, 35면.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16년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이용 음란 관련 상담통계

38) 광주동부경찰서는 12일 여고생에게 음란영상을 발송한 김모군(15·고1)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6일 밤 10시40분께 광주 북구 L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영상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학교 동창생인 김모양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성적 호기심이 발동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3회에 걸쳐 김양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또 인터넷 미니홈피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란영상을 발송한 김모군(16·고2)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4월17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여수시 K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음란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군은 "성적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921325>

고, 고등학생 영상이 매우 많다. 주목할 점은 이 사진과 영상들은 게시자가 자신의 지인들 사진을 올린 것인데, 가해자 중 다수가 고등학생들이고, 이 계정에서는 사진 속의 청소년들에게 문란하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은 합성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가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지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음란물과 합성시킨 이후 ‘강간당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모욕을 요청하는 의뢰자와 의뢰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합성음란물을 만드는 제작자, 합성음란물을 트위터, 텀블러 등 SNS 계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성적 모욕글과 함께 공개하는 게시자, SNS 계정에 올라온 합성음란물에 성적 모욕글을 달며 재배포하거나 합성음란물에 정액 등을 뿌리고 그 사진을 인증하는 참여자 등의 역할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순식간에 합성음란물의 대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성적 모욕을 당하는 이중 피해도 겪고 있다. 게다가 사는 곳과 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조차 모욕과 추가 성범죄의 위협에도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본인의 범죄 가담을 부분적인 역할로만 인식해 죄의식이 낮다. 합성음란물 범죄의 가해자는 ‘나는 문란한 여성들을 고발 받아서 SNS에 올린 것뿐이다. 그 사람을 직접 가해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실제 최근에도 자신의 호감을 거절한 여성들 사진과 음란 사진을 합성한 뒤 개인정보와 함께 배포해 온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다가 이 남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상품권을 받고 합성 음란물을 의뢰 받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나랑도 하자”고 하거나 성매매 문의를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2명이고, 심지어 피해자 6명은 만 19세 미만이다.⁴¹⁾ 또 고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 동창의 사회적관계망(SNS) 사진에 알몸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A군은 초·중학교 동창인 다른 학교 여학생의 페이스북 사진을 내려받은 뒤 합성전문 블로그 운영자에게 “알몸과 합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A군은 자신의 누나가 속옷차림으로 잠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용으로 대신해 달라며 운영자에게 보내기도 했다.⁴²⁾

39) 하예나(2017), “한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VOL 11. 18면.

40) 한국일보(2017.7.13), “SNS 판치는 ‘지인 능욕 계정’...여성들 뿔났다”
<http://www.hankookilbo.com/v/a6ff61186bc0456e881dce9872c88c36>,

41) 이에 피해자들은 “그만하라” 혹은 “진짜 고소하는 수가 있다”는 등의 분노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쏟아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이런 반응을 즐겼다. 피해자들의 반응을 화면에 담아 올리며 “해볼 테면 해 봐라”, “성과가 나온다”는 글귀를 함께 적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대부분은 이 남성과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이 남성과 수 년 막역한 사이였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 및 아동청소년 정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모씨(1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동창생 A 씨등 9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개인정보와 함께 배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본 사람은 최소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음란물 배포로 신고가 돼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를 바꿔왔다. 이 과정에서 평균 6000명이 고정적으로 이 씨의 변경된 궤적을 따르며 배포자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7620

42) 경향신문(2017.7.4) “고교 남학생, 초등동창 여학생 알몸사진 합성하러다 ‘학폭심의’ 회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41138001&code=940202#csidx4620d477c790df3a3b68c739a5052f0

이와 같이 사진을 합성 제보 판매하는 행위는 각 행위 태양에 따라 모욕죄뿐만 아니라 사 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상 음란 정보 유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면 아동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이에서 범죄가 행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III. 대응방안

1.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낙인만을 받게 된다면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의 형성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는 처벌 이외에도 전문가 개입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통한 교화 개선이 필요하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범죄자 재발을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 등 청소년 성범죄자의 개인적 환경이나 성향 및 행위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재발프로그램을 달리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⁴³⁾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⁴⁴⁾

하지만 피고인이 2015.5.12.-2015.5.19까지 지하철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속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한 사례⁴⁵⁾, 피고인이 피해자(여,14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이쁜고딩스타킹다리’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2달여에 걸쳐 15회에 걸쳐 15인의 여성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⁴⁶⁾ 모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행하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이 양형사유에 고려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43) 성용은, 조현빈(2010),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 경찰학회」 12권 2호, 한국경찰학회, 154-155면.

44) 한국일보(2017.8.4), “[관음의 나라] “호기심에 찍어” 변명하지만... 치료 필요한 성중독 증상”(검색일:2017.8.4), “<http://www.hankookilbo.com/v/3386bcf060344c59b18e614dab3be160>, 법무부 서울지방법고정청 자문위원이자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몰카로 체포된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찍어봤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련 충동과 환상이 최소 3,4년간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몰카 유포로 자존감을 충족하는 자체성애적 성향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본인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하게 타자와 소통, 대화, 관계를 맺는 이들은 시각적 자극이나, 왜곡된 성취감으로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한다.

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524 판결

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995 판결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또한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단순 1회 촬영의 초범이 아니고, 이미 다수 횃수의 촬영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의 성폭력 교육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해주는 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데 반해, 일반 성범죄 집단은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이러한 범죄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촬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결과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⁹⁾

2.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법과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자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많다. 한 예로 학교폭력에서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분석 결과 동학교 동학년 학생에게 피해(70.7%)를 당한 비율이 초등(73.5%)·중등(73.8%)·고등학생(60.5%) 공히 높게 나타나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1년에 15시간 성교육을 한다. 이때 성교육에는 교육부가 제작·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활용된다. 그런데 2년간 6억여원을 들여 제작한 이 자료에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8) 조윤오(2016),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 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학회 제12권 제4호, 147면.

49)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65-166면 참조.

50) 교육부 보도자료 2017. 2. 24(금),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등 왜곡된 성 인식과 잘못된 성폭력 대처법을 담고 있어 논란 끝에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하는 등, 제대로 된 성폭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⁵¹⁾

성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SNS 등에 익숙하지만,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폭력의 수단이 되는 각종 도구의 발달 속도에 비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에서 자극적인 내용에 자주 노출될수록 몰카 촬영이나 유포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지인사진의 합성등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가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포될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널리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사이버 일탈은 그것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일어나 상대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은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었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갖는 태도가 사이버성폭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듯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²⁾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과 욕설, 폭력이 당연시되는 풍조가 함께 개선되어야만 청소년 이용자들이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을 죄책감없이 저지르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사이버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의 유형이었던 성희롱,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비방등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의 빠른 무한 확산과 회복 불가능성과 결합하여 인권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⁵³⁾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인 피해회복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에 큰 고통을 느끼고, 가해자 자신도 사후에 이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없음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 특성상 심각한 2차 피해에 대한 인식과 범죄인식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들 역시,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피해자의 가장 큰 피해는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된 후에는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개명까지 하는 등 삶이 파탄나는 점이라고 말한다.

51) 한국경제(2017.8.18.), “단톡방 성희롱·10대 몰카 범죄 급증… 새로운 성범죄 예방 교육 절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891691>

52) 이성식(2005),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연구”,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42면.

53)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8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을 검색하면서 돌아다녀요”, “일상이 완전히 깨져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피해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이 파탄나는 거지요”

“아무리 삭제하고 삭제 요청해도 인터넷에 계속 떠돌아 다니니까, 제가 소송 지원했던 여성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는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연인관계에서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는 실명까지 유포되서 개명도 하였습니다.”⁵⁴⁾

피해자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항변이 “나만 보려고 찍었는데 이게 범죄인가, 우리끼리만 보려고 한 건데 이게 왜 범죄냐”이다. 이처럼 범죄 인식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이버 성폭력 당사자의 피해는 무한 확산되어 회복 불가능하다. 사후에 최초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한 번 유포된 사진등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까지 일일이 찾아내어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재유포되는 2·3차 피해를 완전히 막긴 힘든 것이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은 최초 가해자에게서 멈추지 않고 끝없는 가해가 반복되고 그만큼 피해가 끝이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4. 인터넷업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성적 일탈을 단순히 청소년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청소년 시기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환경에 개입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음란물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선행 연구들에서 발견되어졌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여과 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절제한 인터넷 음란물이 많아지면 성폭력 가해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곧 음란채팅, 포르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청소년의 성폭력 위기에 대한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노력에 있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⁵⁵⁾

그런데 최근에 미국 포털 야후(YAHOO)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

54)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18-119면 참조

55) 이충환, 신준섭(2017), “인터넷 음란물 경험과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5호(2017.05), 20면.

왔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사업자는 모두 39곳이다. 해외사업자 중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야후 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올해 SNS 상의 ‘성매매·음란’ 정보 통신심의 내역 가운데 74%가 텀블러에 업로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⁵⁶⁾

또한 최근에 청소년 성매매와 에이즈 감염이 논란이 되었는데⁵⁷⁾ 이 논란의 중심에는 채팅 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이처럼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⁵⁸⁾ 뿐만 아니라 채팅 메신저와 랜덤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보내주고 돈을 받는 ‘톡스폰’에서 미성년자들까지 음란 영상 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호기심 또는 손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며 톡스폰에 발을 담금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영상이 유포된 후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음란물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5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의원은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7219>,

57)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3학년생 A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고교생 B씨로부터 성매매 권유를 받았다. 이후 A양은 약 3개월 동안 20차례 이상 무차별적으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B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끌어모은 30~40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B씨는 A양이 10대라는 점과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건당 15만~20만원을 받았다. 올해 고등학교로 진학한 A양은 수업을 받는 도중 발열과 함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A양은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로 판정받았다. [http://weekly.chosun.com\(\[2479호\] 2017.10.23\)](http://weekly.chosun.com([2479호] 2017.10.23))

58) 정현미, 장명성, 조진경, 이기연, 박숙란, 김현아(2016),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62-263면.

59) 매일경제(2017.02.22), “독버섯 같이 자라는 ‘톡스폰’, 미성년자 동영상 버젓이 공유”,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6255&year=2017>

발 제 4

▶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서 민 수 _ 인천중부경찰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I. 서론

올해로 4년째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에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청소년들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로 소통해온 것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청소년 업무는 5년이 훌쩍 넘는 듯합니다. 산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전 5년 동안 '청소년'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 온 '이주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청소년 보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존재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단어를 매우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뜸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체를 물어보기라도 하면 저는 세세한 설명을 피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 활동을 주로 하는 '경찰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니다.

5년 이상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그들의 발달적 변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 현상들, 마치 로테이션 같은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목을 받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슈'적인 에피소드만 다루다 보니 생생한 현장 스케치와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작용들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변모되거나 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중점적인 요인들이 그럴싸하게 누락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언론만의 기술적인 방식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때그때마다 토를 달거나 강한 부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울 따름입니다.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학교폭력이 현재와 미래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계획'이 마련되고 그중에 하나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정되고, 좀 더 청소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등장은 경찰에게 그야말로 어릴 적 짝사랑하던 여학생의 담벼락 보다도 더 높았던 학교의 문턱을 낮추게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인식 또한 이제 학교폭력은 교사들의 지도 영역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의 전환점으로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신속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폭력행위에서 여러 유형이 혼합된 복수적인 폭력행위로 진화되었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

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어 있던 '학교폭력'의 활동무대가 빠른 속도로 '사이버 공간'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사회적 용어가 바로 '사이버 학교폭력' 또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더불어 '카카오톡(kakao talk)'이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적인 원인도 '사이버 범죄'를 부추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그들의 '놀이터'이자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숏한 사건들로 이어져 온 5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어떤 현상에 눈을 쫓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완벽한 해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질문들은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답은 되지 못할지언정 필연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15년 들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의 유형을 독식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청소년의 'SNS' 활동 증가는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증가를 도왔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학교 안팎에서 괴롭혔다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숨어들어가 '익명'의 탈을 쓰고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2017년은 사이버 범죄에서 카테고리를 확장시켜 보다 세분화되는 현상을 보인 한 해입니다. 우려는 했었지만 심각할 줄은 몰랐던 영역까지.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사기 그리고 사이버 도박이라는 모습으로 세분화되어 이제 학교전담경찰관은 물론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이버 도박'에 관한 현장의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II. 본 론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정의하고 있는 범죄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도박'이라는 불법 '돈내기' 게임 행위의 행태가 너무나 죄의식 없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매우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소년범죄'와 '자살'을 증동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적 약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섭취하고 있고, 또 그 중

심한 청소년들은 중독된 상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이버 도박'을 가리켜 '마약'에 비유할 정도로 중독성과 범죄 귀인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유에 매우 공감합니다.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을 설명하기 앞서 우리는 '도박'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도박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서는 "도박(賭博)을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는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賭博)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라고 말하면서 부수적으로 도박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승패가 대체로 노력보다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도박이라는 개념은 앞서 말한 도박의 개념에 '사이버' 즉,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을 더하면 사이버 도박의 개념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 안팎 현장에서 듣고 있는 도박의 정의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현장에서 청소년이 말하는 도박은 '호기심'이고, '놀이'이며, 몽뚱한 내 자존심을 끌어 올려주는 '자존감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통쾌한 성취감'이자 '스트레스 해소'라고 입을 모읍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너무 많습니다.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언론에서는 천문학적인 돈뭉치가 마늘밭에 묻혀 있다 발견되자 서로 앞다투어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당시 마늘밭에는 5만원권 지폐로 무려 110억 7,800만 원어치의 돈뭉치가 비닐에 담겨 있었고, 수사 결과 돈 주인은 다름 아닌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자의 수익금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마늘밭에 묻힌 현금 외에 이미 사용한 수익금을 합치면 그 금액은 160억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와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늘밭 사건 이전에도 '불법 도박'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 도박'의 형태는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인터넷의 발달로 '바다이야기',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도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진화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이버 도박'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인기가 무르익을 무렵에서야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이버 도박'이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사이버 범죄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이버 스토킹(363건) <사이버 도박(4,271건) <사이버 음란물(4,354건) <사이버 명예훼손(8,880건)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2016년에는 사이버 스토킹(56건) <사이버 음란물(3,777건) <사이버 도박(9,538건) <사이버 명예훼손(14,908건) 순으로 나타나 '사이버 도박'이 '사이버 음란물'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년 사이에 '사이버 도박'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형태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처음으로 '위기청소년'을 선별하는 설문 항목에서 '사이버

도박' 경험 유무를 묻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중요한 위기요인의 항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반학생과 위기,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해 빈도율에서 '음주', '갈취', '폭력', '일반범죄', '가출' 빈도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기 취약학생'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 보다 사이버 도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 요인이 되는 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전북이 0.8%로 타 지역에 비해 미세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0.4~0.5%의 빈도율을 보였습니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가량 높은 중 6%를 차지했고, 학교급별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학급이 1% 미만의 통계를 보였으나 대체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계고(특성화고 등)가 0.9%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통계 결과에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의 통계보다 사이버도박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도박은 매우 음성적이고 숨바꼭질 범죄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 준비한 설문조사대상은 총 4개 고등학교로 나누었습니다. 인문계고 남, 여학교와 특성화고 남, 여 학교이고, 대상은 1,2,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학교는 이번 설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수되는 도박 상담과 관련해서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 도박'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다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표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설문이라는 점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들의 도박 참여율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낮았습니다. 인문고 여학생이든 특성화고 여학생이든 도박 경험률은 거의 '제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자 고등학생들의 설문조사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문계고 남학생들의 경우 학급별로 1.1명 정도의 통계를 보였고 학교별로도 1.4%의 도박 경험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현재 도박을 하고 있는 학생은 0.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남학생들의 수치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대부분의 도박 상담을 의뢰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특성화고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남학생들의 도박 통계를 보면 전문기관에서의 통계보다도 훨씬 더 높은 18.4%의 경험률을 나타냈고 그중에 현재도 도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제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수치는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모두 도박 경험을 해봤으며 그 중 50% 이상이 현재도 '사이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년범죄 발생률이 도박빚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외 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이버 도박'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사이버 도박' 때문에 5천만원 가량을 탕진한 청년과 어렵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3년 전 청년이 학생이었을 때, 범죄예방 강의를 위해 모 대안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간간히 연락해오다 최근 1년 동안은 아무런 연락이 없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라 마침 저녁 시간에는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이버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포츠토토'라는 승부 방식의 게임이 유행이었던 탓에 가지고 있던 용돈으로 도박을 시작하다가 점차 배팅액이 커지면서 도박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결국 '아르바이트'와 '도박'을 병행하는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사다리'와 '달팽이', '다리다리'와 같은 실시간 게임으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실시간 게임의 특징이 불과 길게는 5분, 짧게는 1분마다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도박을 여러 번 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많은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하기 전까지는 '바카라', '룰렛', '드래건 타이거' 같은 카지노 게임까지 빠져들면서 결국 3년 동안 총 5천여만 원가량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도박하던 당시에는 자신의 친구들 대부분이 '사이버 도박'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도박은 어쩌다 하는 특별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 생각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상생활 같은 '가벼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년은 부탁했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청소년이 나오지 않도록 제게 노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수월하다는 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도박을 하게 되면 그 무리의 친구들은 대부분 도박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친구들 개개인은 또 다른 친구 그룹에 도박 사실을 알리면서 퍼져 나갑니다. 심지어는 추천인을 받으면 수당까지 받으니 수당을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음성적으로 접근하여 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성인 인증을 받을까요? 그것은 성인 인증을 묻지 않으니 성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명을 올려도 회원가입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가입에서 중요한 것은 충전과 환급을 위한 은행 계좌, 가입자의 연락처만 있으면 초등학교생들도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청소년의 휴대폰 번호는 다른 도박사이트 업주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박을 한 번이라도 했던 청소년들은 굳이 다른 도박게임을 찾을 번거로움 없이 알아서 다른 도박사이트가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도박 초기 단계에는 도박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면 할

수록 손실은 커져가고 결국 용돈으로는 부족하여 도박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도박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다행일 텐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박으로 빚진 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 자금을 친구들에게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고이자'를 제안하여 무리하게 돈을 빌립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일부 청소년들은 마치 자신이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부모님을 속여 합의금을 받아 도박자금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은 물론 '절도'와 '사기'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결국 도박은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해 빚어지는 '폭력'과 '협박' 그리고 '강력범죄의 유혹'같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시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쉬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의 학부모 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제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되시죠? 제 아들이 지난달에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에 와서 45만 원을 갚으라고 지금 집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찾아왔다는 건가요?"

"네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112 신고를 해서 돌려보내시고 내일 아드님이랑 이랑 상담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2,3년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이버 도박'이라고 해봐야 '불법 스포츠토토' 같은 PC버전의 스포츠 도박게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도박의 접근 경로가 PC버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용환경이 쉬워졌고, 또 불법 도박업체들이 기업화되면서 청소년들을 겨냥한 맞춤형 게임방식들이 개발됨에 따라 형태 또한 매우 단순하고, 신속하며, 배당의 가능성을 높인 도박게임이 증가하는 등 진화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호기심과 충동성에 약한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인 도박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상담을 해왔던 어머니의 아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위험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올해 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급 친구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은 홀, 짝이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50%의 고승률이 보장되는 '사다리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2-3일에 1회 정도 1만원가량 배팅을 하였고, 이후 도박한 지 일주일 만에 50만원이라는 꽤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도박의 배팅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받은 이후 학생은 짜릿한 승리감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존감까지 얻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배팅금액을 열 배까지 올려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배당금 모두를 탕진하고 오히려 친구에게 고이자를 제안하며 돈을 빌리는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도박’으로 빚어진 여러 사안 중에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돈거래’입니다. 청소년들의 돈거래는 어른들처럼 약정서를 쓰거나 각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학생은 가지고 있던 용돈을 모두 잃고 도박을 못하게 되면 친구나 선. 후배를 찾아가 10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5만원을 주겠다고 본인 스스로 ‘고이자’를 부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친구는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일주일의 지난 후 돈을 빌린 학생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스스로 이 주일 후 20만 원을 갚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고, 결국 갚아야 할 돈은 45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돈을 빌린 학생은 돈을 주지 못하니 도망 다니게 되고, 돈을 빌려준 학생은 돈을 받기 위해 또래 친구나 선배를 동원해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를 상대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의 상담전화를 받아보면 ‘도박’에 대한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부모님의 상담 주제는 ‘돈거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도 자녀는 자신의 방에서 도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거래와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자 저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자제한법’과 관련한 범죄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이자로 돈을 거래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자제한법’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보통은 범죄예방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거의 없고 ‘좋아요’도 많이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콘텐츠는 달랐습니다. 콘텐츠를 본 청소년들은 10회 가량을 공유해줬고, 더구나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줘서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한 고이자의 돈거래가 청소년들 자신이나 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스스로 당황스러운 건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사건들이 정작 저에게는 낯설거나 그리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큼 지금의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처가 깊고 깊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악성’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Ⅲ. 결 론

우스갯소리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 재미있었던 대답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휴대폰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우겨댔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선 글을 통해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은 자칫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 우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생각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사이버 도박'에 대한 선택이 필수적이며 집중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치는 매우 복잡해야 하며 매우 신뢰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들의 가입을 조장하는 허술한 장치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장치를 위해 운영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이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이버 도박'이 담배와 음주 그리고 향정신성 약품보다 더 무서운 '약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사이버 도박'을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예방 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이버 도박' 또한 이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아비에 개 아들 없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 청소년'을 만나면서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같이 밥을 먹으며, 눈물과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비뚤어진 가정과 주위에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채 늘 비난하기만 했던 사회의 모습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호랑이 아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도박'을 했던 청소년과 지금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면서 그들 내면에는 언제나 학교폭력과 기타 소년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요인'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소년범죄 전과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버 도박'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다른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주목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느 아버지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경위님, 아들이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이 너무 많은데 좀 이상해서요."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발 제 5

▶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안 동 근 _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안동근 박병식 김영욱

1.서론



- ➡ AI, VR, AR, IoT, 및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지능화
- ➡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 파악
- ➡ 한국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제언

2.한국



- ➡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 ➡ 범죄 예방 프로그램
- ➡ 정책
- ➡ 법 및 사례

3.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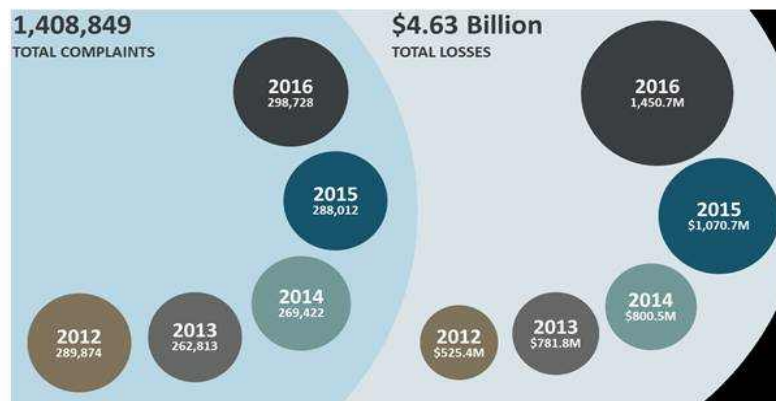


3.1 미국

3.1.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200년 미국 FBI 설립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 신고 접수 현황: 매년 평균 280,000건

<그림> 2012-2016 미국 인터넷 범죄 신고건수 및 피해액



*출처: 미국 연방수사국 2016년 인터넷 범죄 보고서



3.1 미국

3.1.2 미국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 ➡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타주 공공안전부의 합작 프로그램인 “웰스프링 작전(Operation Well Spring)”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 범죄신고센터, IC3)는 모범 프로그램으로 평가

<https://www.ic3.gov/default.aspx>

- ➡ 미국 사이버 괴롭힘 연구소(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사이버 괴롭힘 대처 10계명

<https://cyberbullying.org/responding-to-cyberbullying-top-ten-tips-for-teens>



3.1 미국

3.1.2 미국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 ➡ 학교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안전요원 교내 배치
긴급신고전화+스마트 폰 앱:
<http://www.cyberbullyhotline.com/blog/bully-reporting-apps/>
- ➡ 가정 교육 강조: 알래스카 주 의회
Child protection in schools: A four-part solution.
http://www.akleg.gov/basis/get_documents.asp?session=29&docid=3350



3.1 미국

3.1.3 미국 사이버 범죄 예방 정책

- ➡ 2017. 7. 미국 법무부 사법연구원
"학교안전 종합계획(comprehensive school safety initiative, CSSI)t"
<https://www.nij.gov/topics/crime/school-crime/pages/school-safety-initiative.aspx#>
- ➡ 2017. 미국 주지사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협약
체결 공동대처
<http://www.govtech.com/security/Governors-Discuss-Better-Coordination-Establishing-Protocols-to-Improve-Cybersecurity.html>



3.1 미국

3.1.4 법 및 사례

- ➡ 2017.5.16. 미국 하원 통과 법, '사이버 범죄 법안(Cyber Crime Bill)'
"주 및 지역 사이버 범죄 퇴치 강화 법안(Strengthening State and Local Cyber Crime Fighting Act of 2017(H.R. 1616)
* 하원의 압도적 지지(찬성 408표, 반대 3표)
- ➡ 사이버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1998)"*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3.1 미국

3.1.4 법 및 사례

- ➡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와 워싱턴 D.C., 사이버 괴롭힘 또는 온라인 성희롱 법 제정
2009.9. 연방정부도 법 제안 -> 대표적 법, David 법(David's Law):
2017.6.12. 발효. 텍사스 주가 사이버 괴롭힘으로 자살한 David Molak의 이름을 딴 개정안 통과, 9.1 발효.
<https://cyberbullying.org/bullying-laws/texas>
- ➡ 2016.7.14. 하원 발의, "사생활 보호법(Intimat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6)."연인들의 양갈음 방지법
*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벌 형



3.2 독일

3.2.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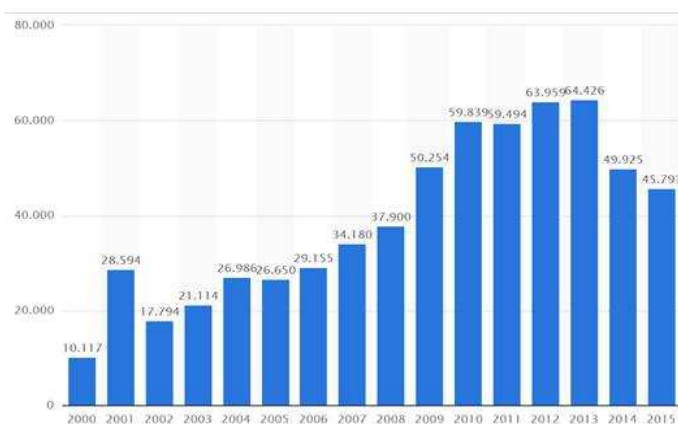
- ➡ 연방범죄수사청 통계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인계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인터넷범죄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인터넷범죄는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BKA 2016).
- ➡ 범죄 피해액은 2015년 4백5만 유로로 집계, 2014년 3백94만 유로에 비해 2.8% 증가(BKA 2015, 7쪽).



3.2 독일

3.2.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그림> 독일 인터넷범죄(좁은 의미) 건수* 사례 변화



출처: Statista 2017.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의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3.2 독일

3.2.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표> 2015년 독일 인터넷범죄자 연령대별 구성

나이 대	비율
21세 미만	14%
21-29세	29%
30-39세	25%
40-49세	18%
50-59세	10%
60세 이상	4%
합계 (11,643)	100%

출처: BKA 2015, p.8에서 재구성



3.2 독일

3.2.2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일부는 가족부나 주미디어청들의 후원으로 활동 중.



유포트 juuport <https://www.juuport.de/main/>

- 괴롭힘을 당하거나, SNS 기록을 지우길 원하거나, 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조치 방안 제안

- 운영자는 juuport e.V. (등록된 협회)로 니더작센주 미디어청(한국 방송위원회와 유사 기구로 주별로 설치)와 긴밀한 관계



3.2 독일

3.2.2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클릭세이프 (안전한 클릭) <http://www.klicksafe.de/>

- 유럽연합의 결정한 'Safer Internet Program' 에 따른 미디어 역량을 진흥하기 위한 프로젝트
- 라인란트-팔츠주(州) 미디어청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州) 미디어청의 공동 프로젝트
- 교사용 핸드북 등 정보 제공, 불법적 내용 신고 핫라인, 어린이·청소년,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상담전화 운영



3.2 독일

3.2.2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보호 넷 <http://www.jugendschutz.net/>

- 청소년 미디어보호 국가협정에 기반한 기관
- 인터넷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



어린이용 검색 사이트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
- www.fragfinn.de
- <http://www.blinde-kuh.de/>



3.2 독일

3.2.3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정책



정부부처

-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각 주별 법무부



3.2 독일

3.2.3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정책



공공 기관

- 주별 '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

- 주미디어청 연합(die Medienanstalten)

-> 청소년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설치

- 연방청소년유해물심의소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자율규제기관 (법적 근거에 따른 규제 co-regulation)

- 영화업계 자발적 자율규제(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 오락 소프트웨어 자율규제(die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 ➡ 컴퓨터범죄에 대한 독일 형법(StGB)의 주요 규정
- ➡ 청소년을 유해 미디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독일 형법(StGB)의 주요 규정
(성윤숙 등. 2010, 355쪽)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 ➡ 청소년보호법(1951/2003)
 - 14세 미만, 14세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 식당, 오락실, 영화관, 디스코텍 등 공공장소 출입 관련 규정
 - 술 담배 소비 관련 규정
 - 영화 컴퓨터-비디오 게임 관련 규정
 - 미디어 및 게임 영역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구인 '영화업계의 자발적 자율 규제'(FSK)와 '오락 소프트웨어 자율 규제(USK)'
 - '연방 청소년유해물심의청'의 활동 관련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국가협정

독일에서는 방송 규제가 주(州)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 및 방송과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는 주들이 맺은 국가협정으로 규제.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유럽연합 규범 및 유럽평의회 협약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2001)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home>

이 협약은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

란사르트 조약(2007.10.25. 제정/ 2010.7.1. 발효)

유럽평의회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 방지를 위한 협정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기타 국제 공조

인터넷 증오 발언 막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INACH)

유럽연합의 온라인 불법 증오 발언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4개의 IT 기업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Microsoft)이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증오 발언 전파를 막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발표. 유럽집행위원회와 IT 기업이 합의한 강령에는 IT 기업이 불법적 증오 발언을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하고 효율적인 처리 절차 도입 의무화.

1)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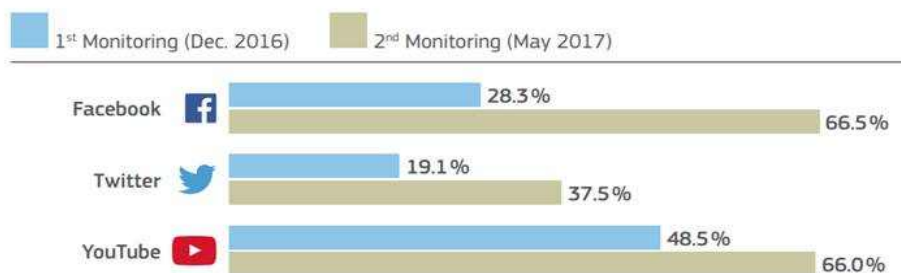
2)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files/hate_speech_code_of_conduct_en.pdf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그림> IT 기업별 삭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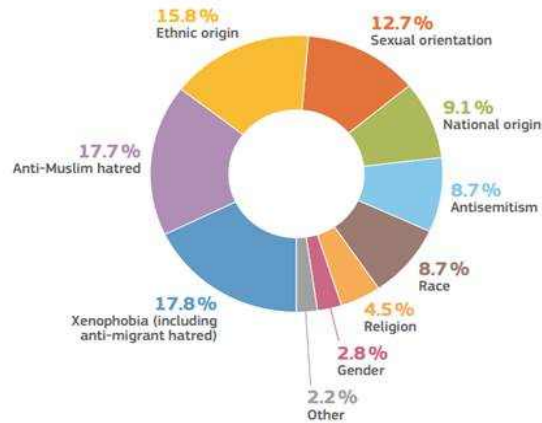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7, p. 2



3.2 독일

3.2.4 독일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 및 사례

<그림>이유 별 신고된 혐오 발언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7, p. 5

<표>일본의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죄명						
부정액세스금지법 위반		248	543	980	364	373
컴퓨터·전자기록대상범죄, 부정지령전자기록관련범죄		105	178	478	192	240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79	95	388	108	157
	전자기록 부정작출·훼손 등	17	35	56	48	32
	전자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	6	7	7	8	6
	부정지령 전자기록 작성·제공	0	4	8	9	8
	부정지령 전자기록 제공	1	34	14	16	21
	부정지령 전자기록 취득·보관	2	3	5	3	16
네트워크 이용범죄		5,388	6,613	6,655	7,349	7,483
	아동 포르노	883	1,085	1,124	1,248	1,295
	사기	899	1,357	956	1,133	951
	(옥션 이용 사기)	(389)	(235)	(158)	(381)	(511)
	음란물 배포 등	699	929	781	840	835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434	520	690	657	693
	저작권법 위반	409	472	731	824	593
	아동매춘	444	435	492	493	586
	협박	81	162	189	313	398
	상표법 위반	212	184	197	308	304
	만남사이트 규제법 위반	464	363	339	279	235
	기타	963	1,106	1,156	1,254	1,593



3.3 일본

3.3.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 표 > 특별법 위반 범죄소년의 법령별 검거인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범죄법	2,673	3,202	3,305	3,806	4,672	3,450	2,965	2,806	2,393	2,111
민폐방지조례	452	395	482	487	546	644	595	607	666	735
부정액세스금지법	34	42	32	26	47	53	26	44	39	43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68	104	170	269	234	278	317	333	494	607
만남사이트규제법	65	214	243	307	311	275	224	171	111	85
청소년보호육성조례	473	517	636	705	690	581	501	571	516	482
총포도검단속법	342	295	297	257	241	239	21	217	251	261
대마단속법	179	227	211	164	81	66	59	80	144	210
각성제단속법	305	249	257	228	183	148	124	92	119	136
마약및향정신의약품단속법	30	31	14	33	19	7	8	6	11	14
독극물법	791	565	466	264	112	99	36	15	11	13
(신너 등 흡입·소지)	652	476	385	221	100	74	32	14	7	13
합계	6,339	6,736	7,000	7,477	8,033	6,578	5,830	5,720	5,412	5,288

주) 「平成28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搾取等の状況について,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3., p.18.



3.3 일본

3.3.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 표 > 만남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피해아동 수





3.3 일본

3.3.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표> 2017년 만남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피해아동

	만남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중요범죄	1	39
아동매춘	43	359
아동포르노	7	507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불순성교 등의 금지)	15	699
아동복지법 위반	20	48
기타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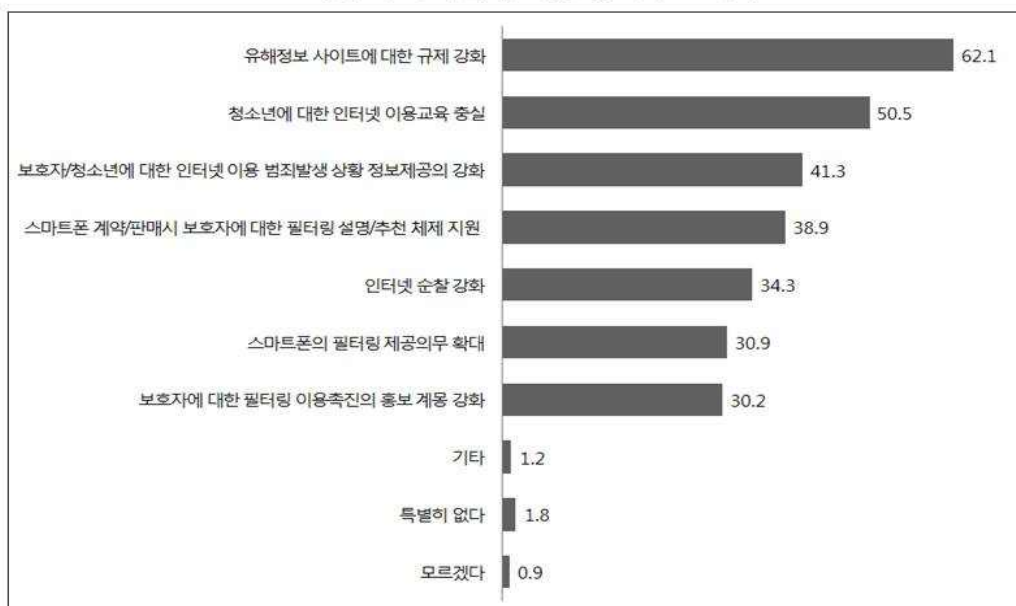
주) 「平成28年版 警察白書」, 警察庁, p.127, 2017



3.3 일본

3.3.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표> 정부에 바라는 인터넷 유해정보 대책





3.3 일본

3.3.1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표> 2017년 만남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피해아동

	만남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중요범죄	1	39
아동매춘	43	359
아동포르노	7	507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불순성교 등의 금지)	15	699
아동복지법 위반	20	48
기타	7	-

주) 「平成28年版 警察白書」, 警察庁, p.127, 2017

<표> 일본 정부의 청소년 관련 위법·유해정보 대책

	법·계획의 정비	민간활동의 지원	보급·계몽 등
내각부	■청소년인터넷 환경정비법의 시행 (2009.4)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기본 계획의 결정 (2009.6)		■도도부현에 필터링 보급확진을 위한 계몽활동의 의회 (2009.2)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의 주지를 위한 홍보계몽활동 ■청소년의 인터넷환경 실태조사
경찰청	■「아동포르노의 근절중점프로그램」에 기초한 유통방지대책의 추진 (2009.6)		■도도부현에의 필터링 보급확진을 위한 계몽활동 의회 (2009.2) ■인터넷 핫라인센터의 운용 ■전국적인 정보시큐리티 강습·비행방지교실의 실시
총무성	■특정전자메일법에 기초한 스팸메일 대책의 강화	■민간단체에 있어서의 위법·유해정보대책 가이드라인 책정, 상담창구 등 시책 지원 ■「안심네트구축」촉진프로그램에 기초한 민간단체의 자율시책 지원 ■휴대전화 필터링 서비스의 다양화 촉진	■도도부현에의 필터링 보급확진을 위한 계몽활동의 의회 (2009.2) ■전국적인 「e-Net Caravan」의 실시 ■ICT 미디어교양 육성프로그램의 조사·개발 ■총무성 「국민을 위한 정보시큐리티사이트」를 활용한 정보제공 ■인터넷 위법·유해정보 검출기술의 연구개발 (2009~2011)

법무성			■ 블로그 사이트에 있어서의 인터넷 인권침해문제 대책 버너광고의 게재 (2009.11~2010.3) ■ 「아동인권 110번」강화주일의 실시 ■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SOS-e메일)」운용에 의한 상담대응 ■ 「아동인권 SOS 사물라이터」를 전국의 초등학교 아동에게 배포
문화체육성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에 의한 정보윤리교육의 충실 (2009.3) ■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안내」의 작성 (2009.3)		■ 도도부현 등에서의 필터링 보급촉진을 위한 계통활동의 회 (2009.2) ■ 전국적인 「e-Net Caravan」의 실시 ■ 「인터넷 폭력」에 관한 대응매뉴얼·사례집의 작성 (2008.11) ■ 학교 휴대전화 취급에 대한 지침에 대한 통지 발표 (2009.1) ■ 학교 정보윤리교육의 추진 ■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대책의 추진
경제산업성	■ 특정상거래법에 기초한 스텝메일 대책의 강화	■ 민간에 있어서의 위법·유해 콘텐츠의 등급기준 책정의 지원 (2009.5)	■ 도도부현에서의 필터링 보급촉진을 위한 계통활동의 회 (2009.2) ■ 가전판매점과 연계한 필터링 보급계통 캠페인의 실시 (2009.3~4) ■ 전국적인 필터링 보급계통 세미나의 실시 ■ 간이용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무상제공 ■ 전국적인 「인터넷 안전교실」의 실시 ■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3.3 일본

3.3.3 법 및 정책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의무」 규정

- 휴대전화 판매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의무(제17조)
- ISP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의무(제18조)
- 인터넷 접속기기 제조업자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이용 조치 의무(19조)
-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노력의무(제20조)
- 청소년 유해정보가 발신된 경우 특정서버 관리자의 노력의무(제21조)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국민 연락 접수체제 정비(제22조)
-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 관련 기록 작성 및 보존(제23조)



3.3 일본

3.3.3 법 및 정책

➡ NTT docomo사는 스마트폰 · 태블릿 및 iPhone · iPad의 서비스 명칭을 「안심 필터」로 명명하고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기능제한의 설정 방법>

미성년자가 iPhone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기능을 제한하고 대상연령이외의 앱의 이용 및 다운로드, 앱의 이용제한을 해 주세요.

<기능제한 패스코드 >

· 기능제한의 설정을 변경할 때 필요한 패스워드입니다. 보호자가 적절하게 관리해 주세요. · 기능제한 패스코드를 망각한 경우 공장출하 시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코드를 잊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각종 앱의 기능 제한>

「기능제한」을 이용함으로써 카메라나 인스톨 등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3 일본

3.3.3 법 및 정책

▷ 만남사이트 규제법(2003)

아동을 상대 이성교제, 성교, 금품 목적 이성교제 요구 메시지 금지 및 처벌.

아동과 청소년의 만남사이트 이용은 금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규제

- <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개정하여 휴대전화에 의한 사이트 열람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 이용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필요성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의 유해정보 접속 위험성 설명 의무화

-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 기록하여 판매점에 제출토록 의무화.



3.3 일본

3.3.3 법 및 정책

▷ 청소년 속옷 거래에 대한 대책

청소년이 사용한 속옷 중개업자나 구매자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2007년부터 강화되었지만, 중개업자나 구매자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적용.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착용한 속옷의 매입 등의 금지) ② 누구도 청소년으로부터 착용한 속옷(청소년이 한 번 착용한 속옷 또는 청소년의 타액이나 분뇨를 말하며, 청소년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칭한 속옷, 타액 또는 분뇨를 포함한다.)를 매입하고, 매각 위탁을 받거나 착용한 속옷 등의 매각 상대방을 청소년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도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 그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3(청소년에의 권유행위 금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이 한 번 착용한 속옷 또는 청소년의 타액이나 분뇨를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24조의4(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한 자

2.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5조(벌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35조(착용한 속옷의 매입 등의 금지) 누구도 청소년으로부터 착용한 속옷을 매입, 혹은 매각의 위탁을 받거나 매각 상대방을 청소년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청소년에 대한 권유 금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착용한 속옷을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결론



4.1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

- ▷ 전국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들간의 정기적 만남 및 긴밀한 협력 강화
- ▷ 정부(사이버 경찰청 등), 학교, 가정의 긴밀한 협력
- ▷ 사이버 폭력과 현실 속 폭력 연계성을 감안한 학교 안전 교육 강화



4.2 정책

- ▷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 ▷ 전통적 인터넷 관련 사업자(NP, ISP, CP 등) 및 소셜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 ▷ 필터링 소프트웨어 효율성 제고 정책 강화
- ▷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 캠페인



4.3 법

- ▷ 사이버 범죄 현장 실시간 점검(**monitoring**)
- ▷ 검찰, 경찰, 법원의 실시간 공조체제 강화
- ▷ 청소년 범죄 관련 법 개정
- ▷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신속한 신종 사이버 범죄 대처
- ▷ 사법기관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고맙습니다 ^0^

M/E/M/O

M/E/M/O

M/E/M/O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인 쇄 2017년 11월 3일

발 행 2017년 11월 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